

가. 수강료 관리

1) 수강료 책정

가)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한다.

나) 수강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하여 결정하며, 강사수준, 교육내용, 시수, 수강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다) 시간당 3,000원을 징수하되 강좌당 학생수를 20명 내외로 하여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수업의 질을 높인다.

라)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로 구성되며, 수용비는 전체 수강료의 7%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2) 수강료 징수 및 사용

가) 수강료는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텀별로, 스쿨뱅킹으로 납부한다.

나) 강사는 직접 학생을 상대하여 수강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

3) 수강료 반환 기준

가) 수강생이 환불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수강료 반환금액 = 납부한 수강료 - (1시간당 수강료 X 환불요청서 제출일 전까지 실시된 수업 시수)**

다) 개강이후 총 수업시수의 1/2이 경과한 경우 수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하여도 수업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자유수강권 지급

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 소년소녀 가장, 시설수용학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차상위계층 등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교육청에 서의 예산 지급을 수강료로만 사용한다.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과후학교 지원학생의 결석일수가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수강시간의 1/2이상일 경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2) 방과후학교 지원대상자 중 출석을 50%미만인 학생은 지원금 중지 및 수강료 수익자 부담금으로 전환됨

(3)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권 박탈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2강좌 이상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중지됨